

여 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사무처 임원 및 직원이 관련 업무로 국내·외에 출장할 경우에 소요될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비란 출장을 위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일비를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여비의 지급은 업무지원팀에서 주관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① 여비는 순로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형편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순로여행이 불가능할 때는 실제로 경과하는 노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여비는 이 규정에 따른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실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특히 우대할 만한 대외인사의 수행
2. 안실련의 특명이 있을 때
3. 여행지의 특수한 상황
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액의 여비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긴급용무로 인해 계산 여유가 없을 때는 여비를 개산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의 정산) 이 규정이 정하는 실비지급 및 개산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복명서, 출장비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재를 얻고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 2 장 국내여비

제6조(지급절차) ① 출장자는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주관부서로 신청한다. 단, 출장비는 선지급할 수 있다.

② 경리부서에서는 제출된 출장신청서에 의해 여비를 계산하고 지급한다.

제7조(출장일수) ① 출장일수는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일수로 한다.

② 출장일수의 기산은 오전 0시부터 한다.

제8조(교통비의 계산) ① 철도, 선박, 항공료 및 자동차임(버스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자가승용차의 교통비는 교통비 지급기준 (별표 1)에 의한다.

제9조(일당의 계산) ① 잡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중식을 제외한 식대는 발생횟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일당 계산의 기준액은 출장비 지급기준(별표 2)과 같다.

제10조(지급제한) 다음의 사유가 있어 안실련에서 필요비용을 부담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안실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강좌, 훈련 기타 교육을 받기 위한 출장
2. 신규 채용직원의 업무수습 목적의 출장

제11조(비직원의 여비) 직원이 아닌 자가 사무로 직원과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지내 출장) 근무지 내의 출장에는 교통비만 지급하며 세부비용은 (별표 1)에 의한다.

제 3 장 해외여비

제13조(구 분) 해외여비는 여행의 목적에 따라 해외출장여비 및 해외연수여비로 구분한다.

제14조(지 급) ① 해외여비는 여객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여비의 일부를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하며 여비금액을 초청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비만 지급한다.

③ 기타 현지에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비 정산한다.

제15조(여객운임) 해외여비 중 여객운임은 실비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6조(부대비용) 해외여행에 따른 출입국세, 외화매입수수료, 여권의 사증수수료 등의 해외여행에 수반하는 부대비용은 별도로 지급한다.

제17조(국내여비 준용) 기타 해외여비에 관한 사항 중 표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여비기준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출장비 지급 기준

단위 : 원

구 분	숙박비	식비(1식당)	일 비	교통비	
				대중교통	자가용
근무지내	-	-	-	5,000	-
근무지외	실비	10,000	10,000	실비	‘〈비고〉 자가용 이용시 교통비의 산정’ 참조

〈 비 고 〉 자가용 이용시 교통비의 산정

가. 산출식

- 1) 시 내 : 교통비(5,000원/일) + 주차비(실비, 최대 10,000원/일)
- 2) 시 외 : 유류비 [왕복거리(km) / 공인연비 × 당일 유가 × 130%(실제연비 및 감가상각비 보존)] + 통행료 + 주차비

※ 단, 화물량 또는 탑승인원이 많을 경우 150%까지 감가상각비를 증액할 수 있다.

① 거리 : 출발지와 출장지간 왕복거리로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한다. 다만, 경유지가 있을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한다.

② 공인연비 : 해당차량의 공인연비 적용

(에너지관리공단 수송에너지 > 자동차 연비 검색 :

http://bpms.kemco.or.kr/transport_2012/main/main.aspx)

③ 유가 : 한국석유공사 Opinet 공시기준 전국평균 유가(www.opinet.co.kr) 기준

나.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다.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2>

국외출장비 지급 기준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상근 임원	가	60	실비(상한액: 471)	186
	나	60	실비(상한액: 422)	136
	다	60	실비(상한액: 271)	102
	라	60	실비(상한액: 216)	85
실/국장	가	50	실비(상한액: 389)	160
	나	50	실비(상한액: 289)	117
	다	50	실비(상한액: 215)	87
	라	50	실비(상한액: 161)	73
팀장	가	40	실비(상한액: 282)	133
	나	40	실비(상한액: 207)	99
	다	40	실비(상한액: 162)	72
	라	40	실비(상한액: 108)	61
간사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 비 고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 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